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80
----------	-------

발의연월일 : 2026. 7. 10.

발 의 자 : 배준영 · 박대출 · 이상휘
김은혜 · 안철수 · 곽규택
김예지 · 김미애 · 서명옥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의 확산과 강화되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 문화가 확산되기 위하여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법 률 제 호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 은 2027년 1월 1일 부터 시 행 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 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 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 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경감 한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u>-2029년 12월 31일-</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 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 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 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② ----- ----- ----- ----- ----- ----- -----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④ ~ ⑥ (생략)	----- ----- ----- ----- ----- -----<u>2029년 12월 31일</u>----- -----. ③ ----- ----- ----- -----<u>2029</u> <u>년 12월 31일</u>-----. ④ ~ ⑥ (현행과 같음)
--	---